

仲裁研究, 第 16 卷 第 1 號
2006년 3월 2일 발행, pp.121-151

논문접수일 2006. 1. 20
제재확정일 2006. 2. 13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의 중재규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CIETAC) Arbitration Rules

우 광 명** Kwang-Myung Woo

〈목 차〉

- I. 서 론
- II. 중국의 국제상사중재제도와 CIETAC
- III.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중재규칙
- IV. CIETAC 중재규칙의 문제점과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 V. 결 론

주제어 : 국제상사중재, CIETAC 중재규칙

* 부산대학교 무역·국제학부 강사

I. 서 론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연평균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8%대의 놀라운 경제발전을 지속하여 온 나라로서 2005년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규모는 수출 620억 달러, 수입 386억 달러 등 1,00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과의 거래관계에 있어서도 2003년 이후 수출대상국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며, 수입에 있어서도 2004년 미국을 제치고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4년 동안 1,885 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창출하는 등 수출은 매년 연평균 30%가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5,900억 달러 늘어나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대기업을 비롯하여 중소기업까지 중국시장에서의 사업성공이 장래의 사업전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경제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양국의 기업간에 무역 및 투자확대에 따른 분쟁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변화는 경제의 세계화 및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사회가 복잡하게 되고 사람들이나 기업의 권리가 다양화되며, 분쟁도 복잡하고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쟁들을 적절히 해결하려고 한다면 소송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특히 대중국 거래증가에 따른 분쟁발생이 증가하기에 효과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분쟁해결 법규와 제도 그리고 관습 등을 충분히 이해 할 필요가 있다.

대 중국사업 전개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우호적 협의, 조정¹⁾, 중재, 소송 등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들 분쟁해결방법

1) 중국대백과사전(법학)에 의하면, 조정이란 쌍방 또는 다수당사자간에 발생한 민사권익분쟁에 대해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또는 인민법원, 법정, 군집조정조직이 화해가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소송을 감소시키기 위해 법정 또는 군집조정조직이 알선, 복

중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의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 이유는 중재는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²⁾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존의 2000년 10월 1일에 시행되었던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은 2005년 1월 11일에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일명 중국국제상회)에서 개정·채택되었고, 동년 5월 1일부터 개정규칙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중재기관인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개정규칙이 2000년의 구 규칙과 어떤 변화가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한 후 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에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중국의 국제상사중재제도와 CIETAC³⁾

1. 중국의 국제상사중재제도

중국의 국제상사중재는 분쟁당사자⁴⁾가 당해 당사자간의 섭외적 요소⁵⁾가 있는 계약성 및 비계약성⁶⁾의 상사법률관계⁷⁾에 관련하는 분쟁을

종교유하여 당사자를 상호 이해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조정은 중국어의 調解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중국에 있어서 調停은 국제투자분쟁처리에 관해서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이 권고적 성질을 가진 정부에 의한 정치적 해결방법의 한 가지를 의미한다.

- 2)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法制工作委員會民法室,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秘書局編著, 中華人民共和國仲裁法全書, 法律出版社, 1995, 69면.
- 3) CIETAC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이하 CIETAC라 칭함)의 약어이다.
- 4) 분쟁당사자로서는 ① 중국내자기업, 외국기업 외에 ② 중국에 설립된 외자계기업(중외합병기업 포함), ③ 홍콩, 마카오 및 대만지역 기업이다.
- 5) 주체, 객체, 내용 중 어떤 한 가지에 대해 중국내 지역 외의 법역과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한다.
- 6) 계약성 및 비계약성이란 계약, 권리침해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으로부터 생긴 경제상의 권리의무관계를 말한다.

중국의 국제상사중재기관에 신청하고, 당해 기관이 분쟁의 시비를 판단하고 판정하는 것이다.

중국에서의 중재제도가 처음으로 확립된 것은 1933년 11월의 중화소비에트노동법(中華蘇維俊勞動法)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상사중재가 시작된 것은 신중국 성립 이후이다. 1954년에 당시의 중국정무원(현재의 국무원)이 민간 사회단체인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때의 국제상사중재는 행정법규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행정법규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관한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의 결정이다. 이 결정은 중국정무원이 1954년 5월 6일 정무원 제215회 정무회의에서 채택된 것이다.⁸⁾ 이 결정에 의거하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1956년 3월 31일 제4회 위원회회의에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대외무역중재위원회중재절차집행규칙’을 채택하였다. 이 시기의 국제상사중재는 법률의 제정에 의한 국제상사중재의 규범화는 아니고 행정법규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국제상사중재에 대해서도 통제무역정책하에서 국가에 의한 통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에서이다. 이 시기에는 중국의 대외무역이 발달하지 않고 법제도 정비되지 않았으며 국제상사중재활동도 간신히 이루어졌다.

1970년대에 들어서 중국은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하고, 시민경제 원리를 도입하였다. 특히 1978년 12월에 중국공산당 제11기 3 중전회가 개

7) 상사법률관계란 예를 들면, 물품매매, 재산 리스, 공사청부, 위탁가공, 기술공여, 합자 경영, 합작경영, 천연자원의 심사개발, 보험, 대리, 컨설팅 및 해상·민간항공·철도·도로의 화물운송 등에 제품품질, 환경오염, 해상사고 및 소유권에 관련하는 관계를 말한다.

8) 이 결정 제1항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외무역계약 및 거래에서 생기는 분쟁, 특히 외국의 상호, 공사 또는 그 경제조직과 중국의 상호, 공사 또는 그 경제조직과의 사이에 분쟁을 해결한다’라고 하여 중국에서의 국제상사중재를 행하는 근거가 형성되었다.

최되고 동회의에서 근대화건설이 전당의 활동의 중점으로서 자리매김됨에 따라 대외경제관계는 일변하였다. 국가는 경제발전의 요청에 응해 단계적으로 국내중재제도를 회복하고 발전시켰다.⁹⁾ 국제상사중재에 관해서도 적극적인 이용제도가 형성되었다. 대외경제관계법에서 분쟁 처리조항을 국제상사중재의 이용이 규정되도록 되었다. 그리고 서방제국과의 2국간협정의 체결도 진전되었다.¹⁰⁾

1986년 12월 2일은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의해 뉴욕협약에 가입하는 것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졌고, 동년 12월 13일에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의해 뉴욕협약 가입에 대한 비준이 이루어졌다.

1991년 민사소송법은 특단으로 1장을 두고 중국의 섭외중재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다. 그 중에는 섭외중재합의에는 법원의 판할권을 배제하는 효력이 있고,¹¹⁾ 섭외중재에서 재산보전,¹²⁾ 섭외중재판정을 강제집행하는 판할법원,¹³⁾ 섭외판정의 불집행의 조건,¹⁴⁾ 그리고 판정불집행후의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¹⁵⁾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1994년 8월 31일에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을 채택하였다. 이는 중재에 관한 최초의 단행법이다. 동법은 현대중재제도가 중국에서 정식으로 확립된 것을 표명하고 있다. 중재법이 시행되고부터 국내중재에 대해 개혁이 진행되었다. 즉 당사자의 자유의사로 중재계약에 의거해 중재를 행하고 강제중재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중재기관과

9) 그 중 비교적 중요한 것은 경제계약중재제도, 기술계약중재제도, 부동산분쟁의 중재제도 등이 있다.

10) 가령, 중일간 무역에 관한 협정도 이때 체결되었는데, 동 협정 제8조 제2항에 당사자간에 발생한 상사분쟁에서는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중재에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중일양국의 중재기관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동법 제8조 제3항)

11) 중국 민사소송법 제257조.

12) 중국 민사소송법 제258조.

13) 중국 민사소송법 제259조.

14) 중국 민사소송법 제260조.

15) 중국 민사소송법 제261조.

행정기관사이의 예속관계를 폐지하고, 새로운 중재위원회를 창설하였으며 동위원회는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된 중재를 한다. 또한 일재이심(一裁二審)제도¹⁶⁾를 폐지하고 흑재혹심(或裁或審)제도를 두어 중재 또는 소송을 선택하거나 일심재정종국(一審裁定終局)제로 변경하였다. 중재법에 의거해 원래 행정기관에 예속되어있던 각급계약중재위원회, 기술계약위원회, 부동산중재위원회를 폐지하고 각 직할시, 성정부 또는 자치구인민정부소재지의 시에 새로운 통일 중재기관을 설립하였다.¹⁷⁾

중국 전국의 중재위원회는 2001년에 12,127건, 2002년에 17,959건을 수리하였다. 2003년 중국 전국에는 중재위원회가 178개이고, 그 위원회에 소속하는 약 2,000명의 중재위원이 그 운영을 맡고 있다. 한편 중재쟁의를 담당한 중재인이 약 2만명 있다.¹⁸⁾ 수리한 중재사건 수는 아주 적고, 중재인배치와의 비율이 불균형하다. 또한 중재는 각지에서 상당히 격차가 있고, 홍콩(香港)이나 심천(深圳) 지역과 같은 활발한 경우도 있지만, 중경(重慶), 성도(成都)와 같은 저조한 경우도 있다.¹⁹⁾

16) 중재법이 시행되기까지는 당사자는 중재재판에 볼복이 있는 경우에 직접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17) 小島武司 編, “ADRの實際と理論 I,” 日本比較法研究所研究叢書62卷, 中央大學出版部, 2003, 203면.

18) 중국중재위원회는 주심 1명, 2명에서 4명의 부주심 및 7명 내지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재위원회의 주심은 부주심 및 위원은 법률, 경제무역의 전문가 및 실무경험자가 담당한다. 중재인은 중재쟁의의 재판자이다. 중국 중재법 제13조에는 ‘중재위원회는 공평·성실한자로부터 중재인을 초빙·임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수치는 중국중재 2002년총괄에 의한 것이다.

19) 2003년의 중국법률연감에 의하면, 심천중재위원회는 2003년에 383명의 중재인이 소속되어 있고 1,744건을 수리하였다. 이것에 대해서 중경시중재위원회는 2003년에 179명의 중재인이 소속되어 있고, 연간 약 400건을 수리하였다.

2. 중국의 국제상사중재기관 CIETAC

CIETAC은 1954년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CCPIT)²⁰⁾ 산하의 대외무역중재위원회로 설립되어, 1988년 CIETAC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CIETAC은 중국의 국제상사중재기관으로서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민간단체이다. 북경에 본부를 두고 있고, 상해와 심천에 지부를 두고 있다.

중국은 중재법이 실행된 후 중재업무가 신속히 발전하였다. 2000년에 이르러 재조직된 전국의 중재기구는 160개로 발전하였으며, 2001년에는 165개로, 2002년에는 168개로, 그리고 2003년에 이르러서는 172개로 발전하였다. 전국의 4개 직할시, 27개 성소재지 도시, 141개 비교적 큰 도시에 모두 중재기구를 설립하였는데, CIETAC과 중국해사중재위원회(China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 이하 CMAC로 칭함)²¹⁾를 포함하면 전국의 중재기구는 모두 174개에 달한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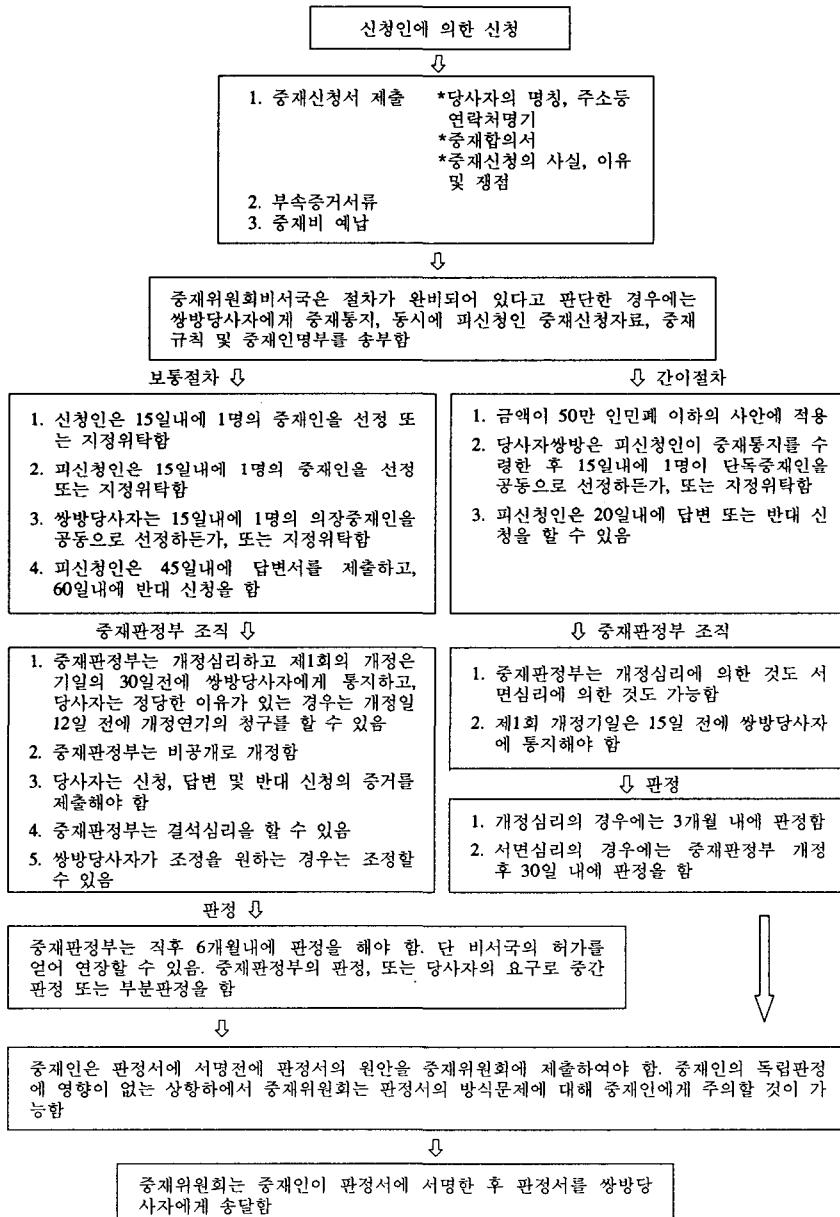
CIETAC에 의한 중재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20) 한국의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의 역할과 유사하며, 중국국제상회(China Chamber of International Commerce: CCOIC)라고도 한다.

21) CMAC는 중재에 의하여 선박, 해상운송, 해상보험관련 분쟁을 독립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국 국무원의 결정에 의해 1959년 1월 8일에 설립되었고, 별도로 해사중재집행규칙을 제정하여 실시하였다.

22) 王証松, 中國仲裁制度, 仲裁研究, 第13卷 2號, 2004, 32면.

(그림 1) 중국국제경제무역위원회중재절차도



III.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중재규칙

1. CIETAC 중재규칙 제정과 활동

(1) CIETAC 중재규칙의 제정

1954년 5월 4일 중국 정무원 제215차 정무회의에서 중재를 통해 대외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내에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결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한 것이 중국의 대외경제무역중재에 관한 최초의 법규이다. 그 후 1956년 3월 31일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 의하여 중재절차규칙이 제정되고, 북경에 대외무역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국제적인 무역분쟁을 중재하는 정식기구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중재제도는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1970년대 말에 둉샤오핑의 개혁, 개방정책의 표방으로 국제무역에 관심을 돌려 1979년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제정한 후 1980년 2월 26일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개칭하면서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1986년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1958; 이하 뉴욕협약이라 칭함)에 가입하였고, 1988년 9월 12일에 CIETAC는 새로운 중재규칙을 제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중재법인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입법기관인 인민회의에 의해서 1994년 8월 31일에 제정되었다. 동법은 1995년 9월 1일에 발효되었는데, 중국에서 국내중재 및 국제중재 모두에 적용된다. 동법은 현대의 중재원칙을 많이 구체화하고 있고, 중국에서의 중재원칙도 명확히 하고 있다.²³⁾

과거 CIETAC의 중재규칙은 섭외사건을 전담하여 담당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00년 CIETAC의 제5차 중재규칙 개정을 통해 국내 중재 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각 지방마다 국내중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약 160여개의 지방중재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이들 지방중재위원회는 각 지방정부의 산하기관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방경제에 불이익을 주는 판정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해당 중재인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CIETAC에서 섭외중재에 추가하여 국내중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생각된다.²⁴⁾

2000년 10월 1일에 시행된 CIETAC 중재규칙은 중국의 현재 경제정세에 적응시키기 위해 2005년 1월 11일에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 의해 개정되어, 동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²⁵⁾ 개정규칙은 총 6장 71개조로 구성되었다. CIETAC는 섭외사건 등을 다루는 중국의 중재기관으로서, 대외거래에 있어서 빈번히 분쟁해결기관으로서 선택되어 오고, 이번 개정이 실무적인 의의는 커다.²⁶⁾

(2) CIETAC의 활동

2003년 3월 11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회 회의에서 이루어진 최고인민법원활동보고서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에 인민법원이 수리한 사안 중에 외국기업이 계쟁 당사자로 된 섭외경제

23) Li Hu, “中國における商事仲裁の紹介,” SOFTIC 第11回國際シンポジウム 論文集, 2002. http://www.softic.or.jp/symposium/open_materials/11th/jp/jLiHu.pdf(2006년1월11일 방문)

24) 김태훈, “중국 섭외중재제도 현지 조사-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를 중심으로-,” *계간 중재*, 2002년 가을, 제305호, 2002, 72면.

25) 본 중재규칙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설립의 1956년에 제정되어, 금회 개정은 제6회 개정으로 전 5회의 개정은 1988년, 1994년, 1995년, 1998년 및 2000년에 행해졌다.

26) CIETAC의 중재규칙이라는 것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중재규칙”이지만, CIETAC에는 이것 외에 금융쟁의의 중재에 관한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금융쟁의중재규칙”이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를 의미한다.

사건은 2만 6,399건이고, 이전 5년에 비해 17%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국제상사중재기판인 CIETAC가 수리한 섭외경제사건은 매년 700건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분쟁수리 및 처리 현황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수리수	238	274	267	486	829	902	778	723	678	669	633	731	684	709	850
결과수	203	205	236	294	574	875	797	764	736	706	738	712	694	704	700

출처 :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ietac.org/>에서 안건 통계표를 참고하여 재작성 하였음.

이 분쟁수리건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이다. 분쟁의 내용은 <표 2>에서 보듯이 중국이 대외개방을 하고부터 대중국 무역, 생산위탁, 직접투자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고, 이것에 수반하여 분쟁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합병기업 등 직접투자와 관계하는 분쟁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1년의 경우 합병관련 기업의 분쟁과 일반화물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이 50% 이상을 점하고 있다. 다음으로 금융, 리스, 건축, 공사, 증권, 부동산, 대리 및 보상무역·위탁가공무역이 48%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의 특징으로서는 입찰, 광고, 보험, 노동 분쟁, 업무위탁관리 등에 관한 분쟁이 주장되고 있다.

CIETAC가 수리한 안건 중 최근에는 합병기업, 합작기업에 관한 안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분쟁사건이 복잡하고 동시에 까다로워져 가고 있다. 특히 합병이나 보상무역계약 등에 관한 안건은 그 처리해야 할 내용이 광범위하고 동시에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상에 규정이 없거나 불명료하여 위약책임을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표 2〉 CIETAC의 수리사안 내용

내 용	90	92	93	북경	94	95*	96	97	98	99	00	01
	%	%	건수	%	%	건수						%
일반화물의 수출입	40	47	113	29		396	427	387	219	326	135	50
플랜트, 설비도입	23	10	45	11.5								
원재료 수출입	20	15	91	23.4								
직접투자 (합병등) 관련	8	19	111	28.5	48.3	187	259	245	225	211	185	
위탁가공무 역관련	6	2	7			7						
건축			3				92	132	234	142	303	
기타(리스, 보험 등)	3	7	19									

출처 : 仲裁与法律通訊, 仲裁与法律의 각호에서 집계.²⁷⁾

(주) 공란은 불명. 95년의 수자는 북경만이다.

분쟁당사자는 2000년의 경우 가장 많은 것이 홍콩(香港)으로 전체의 39.6%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미국으로 7.9%이다. 그 외 싱가포르, 한국, 일본, 대만, 오스트리아, 독일, 캐나다, 영국, 스위스, 러시아,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이다.

2001년에는 분쟁당사자로서 40여개국·지역에 이르지만 홍콩특별행정구가 278건(38%), 미국 65건(9%)이 많고, 기타 싱가포르, 한국, 일본,²⁸⁾ 대만, 오스트리아, 독일, 캐나다, 영국, 스위스, 러시아, 이탈리아, 뉴질랜드의 순이다.

27) 梶田幸雄, “日中の國際商事仲裁制度における協力の可能性について,” CDAMS 市場化社会の法動態学研究センター, 2005년, 2면 참조.

28) CIETAC에서의 중재신청

〈표 3〉. 한국 당사자가 포함된 사건 수

	93	94	95	96	97	98	99	00	01
중 재	14	39	38	42	36	23	31	29	16
조정(알선)	20	28	31	39	47	37	51	62	75

출처 : 김태훈, 중국 섭외중재제도 현지조사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를 중심으로-, 계간 중재, 2002년 가을, 제305호.

2. CIETAC 중재규칙의 주요 개정내용

(1) 개정 배경

중국은 WTO가입과 더욱더 커진 세계화로 국제거래의 증가가 오늘의 중국 당국의 특징이다. 중국과의 거래 증가는 동시에 분쟁의 증가로 이어져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요구가 점차 중요하게 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중재기관인 CIETAC은 2005년에 그 중재규칙을 개정하였다. 그 변화는 여러 면에서 다른 국제중재 규칙들과 밀접한 CIETAC 중재절차를 초래시켰다. 이것은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외국 당사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CIETAC의 중재규칙의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 본	96	97	98	99	00	01	합 계
신청인	18	17	21	9	11	19	95
피신청인	13	13	10	8	7	5	56
합 계	31	30	31	17	18	24	151

출처 : 각주 27) 논문에서 인용

(2) 개정 중재규칙의 주요 내용

1) 업종중재의 규정

개정규칙은 특정업종의 중재센터의 설립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다.²⁹⁾ 또한 중재당사자는 CIETAC가 제정한 업종중재규칙 또는 특정중재규칙의 적용을 약정할 수 있고, CIETAC가 제공한 업종 또는 특정의 중재인 명부로부터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³⁰⁾ 따라서 종래부터 지적되어왔던 중재기관 없이 중재인 혹은 중재인의 전문성의 확보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중재규칙의 적용

개정규칙 제4조 2항에 “당사자는 기타의 중재규칙의 적용을 약정할 수 있고, 또한 신규칙의 관련내용에 대하여 변경하는 취지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단 그 약정이 이것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중재지의 강제적인 법률규정에 저촉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중재위원회가 당사자의 의지를 존중하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동시에 개정규칙이 적용규정을 정리하기 위해 제4조에서 제3 및 4 항을 부가했다. 즉 제3항에 “당사자간에 본 규칙에 따른 중재에 의하기로 약정하였지만 중재기구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당해규정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중재기구는 모두 중재위원회로 된다는 취지를 명기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당사자간에 중재위원회에서 제정한 업종중재규칙 또는 전문중재규칙을 적용한다고 합의하고 또 그 분쟁이 동 규칙의 적용범위에 속할 경우 합의에 따르며 반대일 경우에는 본 규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각 규칙의 적용 규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29) 개정규칙 제2조 9항 참조.

30) 개정규칙 제4조 4항 참조.

3) 중재합의의 서면형식 및 독립성원칙

중재합의는 중재절차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취지의 합의로서 중재절차를 행하기 위한 근본적 기초이며 출발점이다.³¹⁾

중재합의는 서면형식에 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구규칙은 중재합의의 서면형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중재합의는 특별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거래계약서 내에 중재조항의 형태라도 좋다. 이와 같이 개정규칙은 계약법을 참조로 그 관련규정을 도입하고 동시에 국제적인 관행을 참고하여 중재합의가 서면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서면형식에는 계약서, 서신, 전보, 텔레스, 팩시밀리, 전자데이터교환 또는 이메일 등의 유형으로 기재하는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³²⁾

중국의 중재법은 중재합의에서 ①분쟁을 중재에 의해서 해결한다는 취지의 합의 ②신청의 대상으로 되는 분쟁의 범위 ③중재신청을 할 중재기관 등 3가지 사항을 내용으로 포함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³³⁾

중재합의에서는 상기 3가지 사항 외에 중재절차의 사용언어의 합의 등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개정규칙은 당사자의 자주성 존중의 관점에서 당사자합의의 허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중재규칙, 중재인명부 등 재자 이외로부터 중재인의 선정, 중재지, 개정장소 등에 관한 합의이다.³⁴⁾

또한 개정규칙은 구규칙 제5조에 규정한 중재합의의 독립성원칙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즉 계약의 변경, 해제, 종료, 양도, 실효, 무효, 불발효, 취소 및 성립했는가의 여부는 중재조항 또는 중재합의의 효력에

31) 중재라는 명칭이 붙여진 제도 중에는 당사자의 중재합의를 기초로 하지 않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노동중재제도 등이다. 이것들은 본래의 의미의 중재가 아니다.

32) 개정규칙 제5조 3항에서는 중재신청서, 중재답변서에 일방의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존재를 주장하고 타방당사자가 이것을 부정하지 않을 때는 중재합의가 존재하다고 본다.

33) 중재법 제16조 4항. 중국의 중재법에서는 중재는 상설중재기관에 의해서 행해질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CIETAC의 규칙은 일정의 한정을 두고 있지만, 당사자가 적용해야 할 중재규칙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개정규칙 제4조 2항) 여기서 당사자가 임의(ad hoc) 중재를 인정하는 중재규칙을 선택한 경우의 합의의 유효성의 여부가 문제로 된다.

34) 개정규칙 제4조, 21조, 31조, 32조 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³⁵⁾

4) 중재관할권의 이의에 대한 결정권

개정규칙은 중재위원회가 중재합의 및 중재사건의 관할권에 대한 항변에 대해서의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지만,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중재위원회의 수권을 받아 관할권항변의 결정을 내리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³⁶⁾ 그리고 규칙 제6조 3항에서는 중재합의에 관한 이의는 제1회 개정 전에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중재판정부의 심리결과와 모순 할 가능성 을 없애기 위해서 중재위원회가 표면증거에 의거해서 내린 결정은 중재판정부가 심리 중에 검토한 표면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 또는 증거에 의거해 고쳐서 관할권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³⁷⁾

5) 신의칙조항, 공평조항 및 이의포기조항

개정규칙은 중재당사자에 대하여 성의를 가지고 중재절차를 행하는 것을 요구하고,³⁸⁾ 또한 중재인에 대해 각 중재 당사자를 공평히 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³⁹⁾ 이들 규정은 이의포기조항⁴⁰⁾도 동시에 선언조항을 구성하여 중재절차를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중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및 중재인의 의무를 명백하게 한 조항이다.

6) 중재신청

중재신청은 중재신청서⁴¹⁾를 중재위원회 또는 분회에 제출하여 이루

35) 개정규칙 제5조 4항 참조.

36) 개정규칙 제6조 1항 참조.

37) 개정규칙 제6조 2항 참조.

38) 개정규칙 제7조 참조.

39) 개정규칙 제19조 참조.

40) 개정규칙 제8조 참조.

41)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당사자의 특정 등에 관한 사항, 중재신청의 기초로 되는 중재

어진다.⁴²⁾ 위원회 또는 분회가 신청서를 수령한 때에 중재절차가 개시되고, 중재신청에 즈음하여서는 신청서의 제출과 동시에 관련증거의 제출 및 중재비의 예납이 필요하다. 중재신청이 수리되면 당사자 쌍방에게 중재수리통지가 이루어지고, 수리통지의 송부와 동시에 CIETAC 중재규칙과 중재인명부가 송부된다.

7) 중재기한의 단축

개정규칙은 섭외안전의 심리기한을 9개월에서 6개월로 국내안건의의 심리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각각 단축하였다.⁴³⁾ 또한 간이절차의 심리기한에 대해서 개정규칙은 개정심리와 서면심리를 구별하지 않고 3개월로 통일하였다.⁴⁴⁾ 답변, 반대청구 및 심리통지의 시간도 단축되었다. 이것은 당사자의 합리적 준비시간을 보증한 다음 중재판정부의 심리 및 분쟁해결의 신속화를 강하게 의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8) 중재인의 선정

3인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경우 각 당사자는 중재수리통지 수령 후 15일 이내에 중재인 1명을 선정하고 중재위원회에 통지한다.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복수인 경우는 복수의 신청인 또는 복수의 피신청인이 각각 공동으로 각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소정의 기간 내에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중재인을 지정한다.

합의, 사안내용과 분쟁의 요점, 중재청구, 중재청구의 근거로 되는 사실과 중재청구의 이유 등이다.(개정규칙 제10조)

42) CIETAC는 북경에 중재위원회, 상해와 모광(海框)에 분회가 있고, 당사자는 이 중 어느 기관의 중재를 청구할까를 약정할 수 있다. CIETAC의 중재절차에 의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있지만 상기 3기관의 어디에서 중재를 할지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는 중재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이 중복된 때는 먼저 신청된 위원회 또는 분회에서 중재절차가 이루어진다.

43) 개정규칙 제42조 1항, 제65조 1항 참조.

44) 개정규칙 제56조 1항 참조.

중재인은 CIETAC의 중재인 명부등재자⁴⁵⁾ 중에서 선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정규칙에서는 당사자가 명부등재자 이외의 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약정한 경우에는 명부등재자 이외의 자를 중재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⁴⁶⁾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또한 개정규칙 제22조 2항에서는 “의장중재인은 피신청인이 중재통지를 수취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선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지정하도록 공동으로 위탁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절차는 단독중재인의 선정에도 적용된다. 관련 규정은 중재절차를 쓸데없이 길게 끌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당사자의 의장중재인 선정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보다 많은 선택을 주는 것이라 하겠다.

9) 중재인의 보궐

개정규칙에 의하면 중재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그 직책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개정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그 직책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중재위원회주임은 당해중재인을 경질 시킬 수 있다. 이 규정은 중재당사자가 중재인선정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중재위원회주임의 중재인에 대한 감독 관리권을 강화한 것이다.⁴⁷⁾

10) 과반수에 의한 절차 속행

개정규칙은 중재인의 결원이 생긴 경우, 일정의 요건(최종회의 개정이 종료, 쌍방당사자 및 중재위원회 주임의 동의)을 충족시키면 당해중

45) 규칙개정시의 중재인명부(一大六小의 7명부) 중재자는 합계 1,025명(중국적 중재인 793명, 홍콩특별행정구·마카호특별행정구·대만지구 및 외국적 중재인 232명)라고 할 수 있다.

46) 개정규칙 제21조 2항 참조.

47) 개정규칙 제27조 참조.

재판정부에서 중재절차의 계속 및 중재판단의 작성을 인정하고 있다.⁴⁸⁾ 당해 규정은 중재절차가 개별중재인 자신의 원인에 의해서 연기시키는 것을 회피할 수 있고, 당사자의 권리가 보장된다.

11) 중재지 및 심리장소

개정규칙은 중재지와 심리장소를 구별하는 것과 동시에 중재당사자가 중재지 및 심리장소의 모든 경우에도 약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심리장소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CIETAC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단 중재당사자가 CIETAC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를 심리장소로서 약정하였지만, CIETAC의 소정기간 내에 중재인의 여비, 식비 및 숙박비 등의 실제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는 CIETAC의 소재지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된다.⁴⁹⁾ 이 규정은 중재지 및 심리장소의 개념을 명백히 함으로써 상사중재 즉, 국제상사중재의 관행에 부합되게 하였다. 또한 적용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당사자는 자유로이 중재지 및 심리장소를 약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12) 심리방식의 개혁

중재사건의 심리는 중재판정부를 열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 당사자 쌍방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고, 중재판정부가 심리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는 서면심리방식으로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더구나 중재판정부는 심리에 앞서 필요에 응해서 절차상의 지시, 질문서의 송부, 심리 전 회의의 개최, 준비절차 법정의 심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규칙은 중재당사자가 심리방식을 약정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중재당사자가 약정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가 스스로 적

48) 개정규칙 제28조 참조.

49) 개정규칙 제31조, 제32조 및 제69조 3항 참조.

당하다고 인정한 방식으로 중재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⁵⁰⁾ 이와 같이 중재판정부에서의 심리는 당사자가 특별한 약정을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단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또한 각 당사자에게 진술과 변론의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13) 중재와 조정의 결부

개정규칙은 중재당사자가 중재위원회 외에서 화해에 이른 경우 중재위원회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화해협의에 의거해서 판정문을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중재와 조정의 결부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을 보다 한층 완전화 하였다.⁵¹⁾

14) 중재판정부의 소수의견 또는 개별의견

개정규칙은 중재판정부의 소수의견 또는 개별의견(다수의견이 될 수 없는 경우)을 판정문에 첨부할 것을 인정하지만, 소수의견 또는 의장중재인 이외의 개별의견을 판정문의 일부로 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다.⁵²⁾

이외에도 중재의 비공개⁵³⁾, 중재인의 공개⁵⁴⁾, 답변서의 형식⁵⁵⁾ 및 반대중재신청의 답변기한⁵⁶⁾ 등의 규정도 신설하였다.

50) 개정규칙 제29조 1항 참조.

51) 개정규칙 제40조 참조.

52) 개정규칙 제43조 4항, 5항 참조.

53) 개정규칙 제33조 참조.

54) 개정규칙 제25조 참조.

55) 개정규칙 제12조 1항 참조.

56) 개정규칙 제13조 4항 참조.

IV. CIETAC 중재규칙의 문제점과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1. CIETAC 개정규칙의 문제점

(1) 중재규칙의 적용문제

2000년 중재규칙에서는 CIETAC에서 중재당사자는 CIETAC 규칙 이외의 중재규칙, 예를 들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규칙 등에 의거해 중재를 행하는 것을 합의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CIETAC의 자유재량에 의해서 당사자의 합의를 승인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였다.

2005년 개정규칙은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위원회에 신청하여 중재하는 데 동의한 경우에는 본 규칙에 따라 중재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⁷⁾ 그리고 당사자 간에 본 규칙에 따른 중재에 의하기로 약정하였지만 중재기구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당사자가 중재규칙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다시 말해, 만약 당사자가 체결한 중재조항에 중국섭외중재기구에서 중재를 할 것을 규정하였다면 반드시 중국섭외중재기구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할 것에 동의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부 국가에서 중재기구와 중재규칙을 분리하여 당사자 쌍방이 자유롭게 그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중재규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⁵⁸⁾

57) 개정규칙 제4조 2항 참조. 단, 개정규칙에서는 이행불능이나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면적으로 유효하다고 하고 있다.

58) 윤진기, “중국 중재법상의 문제점과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계간 중재, 1999년 봄, 제29호, 86면.

(2) 중재인 관련 문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중립적인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은 중재의 중요한 이점이다. 중재인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중재인의 중립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구규칙에서는 CIETAC의 중재인명부 내에서만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하였기에 국제적인 관행으로부터 큰 차이를 보여 왔었다. 이것에 대해 2005년 개정규칙에서는 당사자가 명부등재자 이외의 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였고, CIETAC 의장의 확인을 얻은 경우에는 CIETAC 명부등재자 이외의 중재인을 지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의장중재인 선정절차에 대해서도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CIETAC 중재에 의한 재정(裁定)에서는 다수의견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의장중재인의 판단이 최종적 중재판정으로 된다. 따라서 수석중재원의 선정은 특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구규칙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 CIETAC가 의장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었고, 실제로는 중국국적자가 의장중재인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현실적으로도 중재절차는 중국인 3명으로 중재가 행해지고 있어 중재인의 중립성이라는 문제로 중국인 3명이 된다면 한국기업으로서는 당연히 걱정이 따른다.

개정규칙에서는 각 당사자가 1명에서 3명의 후보자 리스트를 CIETAC에 제출하고, 쌍방의 리스트에 동일 후보자가 있으면 의장중재인으로 선출된다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공통의 후보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CIETAC이 그 사案에 가장 상응하다고 생각되는 자를 선정하고, 공통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만 CIETAC의 재량에 의해서 선정한다. 이 경우 쌍방 어디에도 후보로 들지 않은 인물이 선정될 수 있다. 따라서 CIETAC의 재량에 의한 선정 시에 중립적인 인물의 선정이 문제가 되고, 이러한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 중재조항에 이에 관한 명시규정을⁵⁹⁾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 CIETAC의 중재인 명부에는 중재인이 전체 1,025명 중

에 중국국적 중재인은 793명, 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특별행정구·대만지구 및 외국적 중재인 232명이 있다.⁶⁰⁾ 숫자상으로 볼 때 외국 중재인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국인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고 있어, 세계의 기타 중재기구에서 통상 볼 수 있는 문화적 중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이러한 상황은 ICC의 중재규칙과 UNCITRAL 모델법 등 세계적으로 저명한 중재기구의 중재에서는 등록된 중재인 명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재인 선정에서 분쟁당사자와 다른 국적의 중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⁶¹⁾

(3) 중재절차의 용어문제

절차용어의 문제이지만, 이것은 규정에서 당사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중국어이다. 중재조항에서 용어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기재되면 좋지만 합의가 없는 한 중국어로 절차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당사자가 주장을 하는 심리가 일반적으로 1회에 종료되는 것이 중국 중재의 특징이다. 통상 심리는 우선 절차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당사자와 결정하고, 그 위에서 다툼이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하여 그 절차에 준해서 이루어지지만 중국은 하루에 걸쳐서 중재절차를 전부 진행하고, 증인심리도 이루어져 1회에 대체로 종료된다.

또한 용어에 대해서도 중국측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중국어로 중재가 시작된다는 통지가 송부되고, 영어의 번역이 첨부되지 않는다. 기업들이 중국어에 능통하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 그것을 번역하여 답변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심리도 통역을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변호사나 중국인을 대리인으로

59) 가령, “한국 및 중국의 국적을 가진 인물은 의장중재인으로 되지 않는다.”

60) 2001년 9월 1일 기준 CIETAC의 중재인 명부에 의하면 한국인은 6명이었다.

61) 성백영,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의 내용과 문제점 고찰 -법외중재제도를 중심으로-,” 한중법학회 정례학술발표회 발표논문, 1998, 34면.

활용할 수 없다면, 상대방과의 다툼에서 패하는 경우로서 보통의 절차와 달리 대리인의 선정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된다.

(4) 중재판정의 집행상의 문제

중국의 인민법은 중국법률 규정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내릴 중재판정뿐만 아니라 뉴욕협약 체약국의 중재기구가 내린 판정도 승인 및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집행에 관한 법제도와 현실적인 법집행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령 중재집행기관인 중국의 지방법원이 지방경제에 불이익을 주는 판정의 집행을 거부한다든지 또는 집행여부에 대한 심리를 장기간에 걸쳐 절질 끊으로서 집행의사를 약하게 하여 사실상 집행을 어렵게 만든다.⁶²⁾

지방에 가면 어느 정도 지방의 보호주의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CIETAC에서 중재판정이 나온 경우 또는 한국에서 중재판정이 나온 경우라도 그것을 중국 법원에 가져가서 집행하여 받는 경우 중국의 법원이 그 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문제가 적지 않다. 1995년 8월 28일 인민법원의 섭외중재 및 외국중재사항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는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에 의거, 섭외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거절할 경우 사전보고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지방 인민법원의 자의적인 집행거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재산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재산을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관할 성이나 자치구의 행정 법령에 따라 강제 집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국은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집행을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들과 같은 법에 의한 강제 집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62) 김경배, “중국 강제집행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9권 제3호, 2004, 264면.

2.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1) 계약상대방의 신용상태 확인

우선 계약상대의 신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새로운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기관을 통해서라도 신용 조사를 거래 개시 시에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가령 매매에 있어서도 1회, 2회는 약속한 대로 납기에 상품을 인도하였지만, 3회 정도 되면 납기는 자연되고 품질도 상이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경우 대금이 이미 지급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상대방과 교섭하려고 한 시점에서는 상대방 회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든가, 혹은 파산해 버려 개인에게 재산이 전부 이전되어 있는 실태도 자주 있다. 따라서 최초에 신용조사를 한 뒤 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신용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계약 등의 서면화

증거의 보전이 있지만 계약은 구두에 의해서 성립될 수 있지만 중재나 소송에 있어서 법적절차에서는 자주 어떤 계약내용을 당사자가 합의한 것인지 혹은 계약이 도대체 성립했는지의 여부 자체도 다툼이 된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화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계약서 형식으로 양당사자가 서명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왕복서한으로 명확히 계약의 내용을 알도록 해두는 것이 후의 법적절차에서 증거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의 보전을 염두에 두면서 계약 교섭을 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실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결하는 절차 중에 서면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서 필요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둔 교섭이 중요하다.

(3) 계약내용의 명확화

분쟁을 예방한다는 의미에서는 수많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할까, 그 경우 어떤 권리가 발생하고,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가 등을 상정하여 자사의 권리 의무에 대한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계약조항의 문제로서 불가항력사유의 제한이 있다. 이것은 특히 중국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뭐든지 불가항력이니까 면책이라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다. 날씨가 나빠서 제품의 원료가 되는 작물이 잘 성장하지 않아 그 때문에 제품도 만들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가 분쟁이 된다. 불가항력사유는 계약서에 규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각각의 사유를 잘 확인함과 동시에 한정열거로 하여 제한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매매에서는 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수입화물이 실제로 도착하여 검사하였더니 다른 경우 신발을 구매하였으나 제품의 크기와 색, 규격이 다르고 품질도 다르다는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법률문제 이지만 수입화물에서는 선적되지 전에 검사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장중요하다. 이것은 특히 현지에 자사의 지점이 없어도 제3자의 검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위탁하여 상품의 내용이 계약조건과 일치한 점을 확인 후 선적을 시키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현실은 지불도 신용장으로 결제가 완료되어있고 전혀 팔리지 않는 상품이 도착되었다는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4) 중재협정의 적극 활용

분쟁은 당사자 간의 직접 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교섭했다 하더라도 교섭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를 개입시켜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제3자 개입의 해결책으로 효과적인 방법은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소송에 비하여 중재의 유용성은 절차의 유연성, 비공개 원칙, 중재인의 전문성 그리고 해결기준의 탄력성 등이다.

중국과의 거래에서 중재가 필요한 이유는 분쟁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즉 1970년대 후반의 개혁·개방정책을 행한 이래 시장시스템으로

의 전환, 경제의 급성장 및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 등에 의해 기업간에는 대량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과학기술의 진전에 따라서 IT 산업분쟁, 네트워크 거래분쟁, 지적재산권분쟁 등의 현대형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법 제도는 아직 완비되어있지 않고, 이들의 현대형 분쟁을 재판한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적정한 판단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모두 충분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재판관에 맡기는 것 보다, 충분히 각 영역의 전문가를 통한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상거래분쟁에서의 해결은 중재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고, 한국 기업들은 계약서 작성 시 중재조항으로 한중중재협정을 적극 활용하여 이 협정에서 권고하는 중재조항⁶³⁾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63) 한국과 중국은 1992년 12월 15일 중국 북경에서 한중 상사중재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양국의 사회민간단체인 대한상사중재원(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 약칭 KCAB)과 중국의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 약칭 CIETAC) 사이에 체결한 민간협정으로서 사법상의 계약형식의 협정입니다.

양국의 경제주체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서에 삽입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중재조항은 아래와 같다.

<영문>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 arising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out of, relating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pursuant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The arbitration award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contracting parties."

<중문> ① “凡因執行本合同所發生的或與本合同有關的一切爭議，雙方應首先通過友好協商解決；如經協商不能解決，應提交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依該會現行的仲裁程序規則進行仲裁。仲裁裁決是終局的，對雙方均有約束力。” ② “凡因執行本合同所發生的或與本合同有關的一切爭議，雙方應首先通過友好協商解決；如經協商不能解決，應提交仲裁。仲裁在被訴一方國家：如在中國，由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或其分會)按照該會現行的仲裁程序規則進行仲裁。如在000000(外國被訴人所屬國家名稱)，由000000(被訴一方國家常設機構的地點和名稱)按照其仲裁程序規則進行仲裁。仲裁裁決是終局的，對雙方均有約束力。” ③ “凡因執行本合同所發生的或與本合同有關的一切爭議，雙方應首先通過友好協商解決；如經協商不能解決，應提交000000國000000地000000仲裁機構，按照其仲裁程序規則進行仲裁。仲裁裁決是終局的，對雙方均有約束力。”

V. 결 론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 경제 도입과 더불어 국제적인 수준의 법률체계를 갖추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외개방정책 추진으로 대외무역, 직접투자의 수입을 확대함에 따라 섭외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분쟁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중국인(기업)의 계약의식이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질곡 등의 존재로 지적된다. 이러한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는 재판 및 재판외분쟁처리, 즉 ADR로서 조정이나 중재가 있다.

중국이 외국기업과의 분쟁처리법으로서 가장 이용도가 높은 것이 중국국제경제무역위원회(CIETAC)에 의한 중재이다. 한중간의 분쟁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 CIETAC의 중재규칙도 최근에 개정되어 이러한 현상에 적용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CIETAC의 중재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기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로 된다.

따라서 CIETAC의 개정중재규칙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이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참 고 문 헌

- 김경배, “중국 강제집행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9권 제3호, 2004.
- 김태훈, “중국 섭외중재제도 현지 조사-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를 중심으로-”, 계간 중재, 2002년 가을, 제305호, 2002.
- 반홍식,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

성백영,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의 내용과 문제점 고찰 -섭외중재제도를 중심으로-”, 한중법학회 정례학술발표회 발표논문, 1998.

송상현,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의 이념과 전망”, 민사판례연구 X IV, 박영사, 1993.

왕홍송, 중국중재제도, 중재연구, 제13권 2호, 2004.

윤진기, “중국 중재법상의 문제점과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계간 중재, 1999년 봄, 제29호.

梶田幸雄, “日中の国際商事仲裁制度における協力の可能性について”, CDAMS 市場化社会 の法動態學研究センタ-, 2005년.

小島武司 編, “ADRの實際と理論 I ”, 日本比較法研究所研究叢書62卷, 中央大學出版部, 2003.

郭美松, “中國法治現代化と ADR の運命”, 國際商事法務, Vol. 33, No. 2, 2005.

鈴木仁志, “アメリカ合衆國のADRと訴訟社會(上)”, 「NBL」, No.715, 2001. 6.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法制工作委員會民法室,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秘書局編 著, 中華人民共和國仲裁法全書, 法律出版社, 1995.

Li Hu, 中國における商事仲裁の紹介, SOFTIC 第11回國際シンポジウム論文集, 2002.

http://www.softic.or.jp/symposium/open_materials/11th/jp/jLiHu.pdf

Zheng Rungao, 中華人民共和國におけるADR, SOFTIC 第11回國際シンポジウム 論文集, 2002.

http://www.softic.or.jp/symposium/open_materials/11th/jp/jRZheng.pdf

Coulson, Robert, “Professional Mediation of Civil Disputes”,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1984.

Diamant N.J.,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in China," *Journal of*

- Conflict Resolution*, Vol. 44, No. 4, August 2000.
- Lieberman & Henry, "Lessons from the ADR Movement", *University of Cleveland Law Review*, Spring, 1986.
- McLaughlin, Joseph 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e American Law Institute*, 1993.
- He Wei and Xing Keke, "Introduction of Main Amendments to the CIETAC 2005 Rules," *King & Wood China Bulletin*, 2005.
- Peerenboom Randall,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china," *The China Business Review*, Vol. 28, No. 1, 2001.
- Authorities and Duties of Arbitrators under the Korean Arbitration Act and the American Arbitration Acts

ABSTRACT

A Study on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CIETAC) Arbitration Rules

Kwang-Myung Woo

As globalisation extends its effect and particularly following China's acce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in 2001, ever greater number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will feature a Chinese party. China has certainly made efforts in recent years to rectify law problem. While conducting business in China, foreign companies occasionally find themselves embroiled in disputes with Chinese individuals and companies.

As foreign businesses invest in the extraordinary market opportunities in China, international arbitration has also become the preferred method for handling disputes with Chinese partners or with other foreign corporation over operations in China.

The new Arbitration Rules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CIETAC) came into force on 1 May 2005. The new rules represent a major overhaul of CIETAC arbitration procedures and are sure to enhance CIETAC's position as a leading player in the resolution of China-foreign business disputes. The changes are significant for all companies doing business in China. So, this article investigated some amendments on the basis of 2000 Rules.

Key Words :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IETAC arbitration rules